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정비 시 금지 시설에서 제외 〉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95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문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정비 시 금지 시설에서 제외	2
※ 참고자료: 장사시설 관련 현황 및 통계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5. 4.
3. 회 부 일 : 2026. 5.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동묘지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가 등이 재개발·정비 등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공설묘지의 재개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공설묘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존 공설묘지의 관리·정비 등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Ⅲ. 검토의견

1. 보호구역 내 공설묘지 재개발·정비 시 금지 시설에서 제외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9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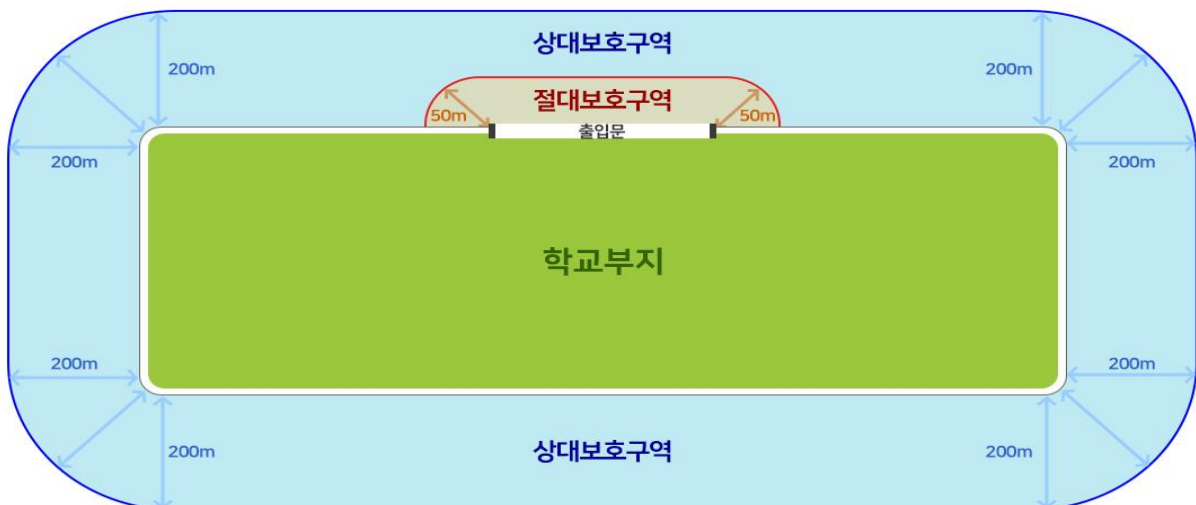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및 제13호에 따른 자	9. ----- ----- <u>화장시설, 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 제13호에</u> -----

연장지(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가족자연장과 제 2호에 따른 종중·문중자연장은 제외한다)	----- ----- ----- 제외한다)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법률 제13937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 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것은 제외한다)
10. ~ 32. (생략)	10. ~ 32.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은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정하면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범위 안은 ‘절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였음¹⁾.

<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



자료: 교육환경정보시스템

□ 교육환경법 제9조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는데,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육환경법 제9조에 규정된 모든 행위 및 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행위 및 시설을 허용하고 있음(담배자동판매기,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

< 교육환경법 제9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등 >

교육환경보호구역		제한 내용
절대 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지역	제9조에 열거된 모든 행위 및 시설 금지
상대 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시설 허용 (제9조제14호부터 제27호까지 및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

□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제9호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

1) 교육환경법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모두에서 금지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공설묘지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명시하되, 교육환경법 최초 시행일(2017년 2월 4일) 이전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공설묘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개발 또는 정비하는 경우에는 금지시설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일부 지역에 설치된 공설묘지가 노후화로 관리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기존 공설묘지는 학교 주변에서 존속이 허용되는 반면, 재개발 또는 정비를 하는 경우 오히려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바, 공설묘지의 재개발·정비를 촉진하여 관리 수준을 제고하려는 데에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사시설을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²⁾, 공설묘지는 이 중 묘지의 한 유형으로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다른 장사시설과는 구분되는 개념인바, 공설묘지는 지금까지 교육환경법상 금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8.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13. “자연장지(自然葬地)”란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15. “장사시설”이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대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공설묘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 주변 공설묘지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바³⁾, 현행 체계에서는 공설묘지 규제가 교육환경법이 아닌 장사 관련 법령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구조임.

□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개정안의 취지인 ‘현존하는 공설묘지를 재개발·정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적법했던 공설묘지가 위법 시설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 자체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이는 입법기술상 교육환경법의 금지시설 규정(제9조제9호)에 공설묘지를 새로 포함시키는 방식보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설묘지 설치·관리 규정에 재개발·정비 시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이 현행 법체계와 규율 구조에 더 부합하는 입법 수단인 것으로 보임.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제11조 관련)

1. 공설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封墳), 평분(平墳) 또는 평장(平葬)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중 략)

바. 공설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묘지에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나 토지 또는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 **교육부: 신중검토**

- 현재 공설묘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시설이 아님에도,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을 위해 공설묘지를 금지시설에 추가하면서 기존시설의 재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행위로 사료됨
- 아울러, 학교 인근 기존 공설묘지를 재개발·정비하는 것은 장사 관계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 실익이 없음

○ **대구교육청: 신중검토**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묘지’를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하지 않아, 개정 불필요

문 의 처

02)6788-5184

참 고

장사시설 관련 현황 및 통계⁴⁾

< 장사시설 유형별 현황 >

구분	화장시설(화장로)	묘지	봉안당(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계	62(400)	499	454(625)	211	1,081
공설	61(399)	328	147(200)	79	78
사설	1(1)	171	307(425)	132	1,003

< 공설묘지 현황 >

시도	시군구	개소수	묘지설치현황				
			허가면적 (㎡)	묘역면적 (㎡)	총매장 가능구수 [A]	기매장 구수 [B]	향후매장 가능구수 [A-B]
7	92	328	27,584,986	17,992,192	650,382	474,106	176,276
서울	1	5	7,152,831	4,802,997	53,355	49,602	3,753
부산	0	1	770,543	249,499	29,021	25,358	3,663
대구	0	4	1,926,481	1,926,481	10,705	10,365	340
인천	5	80	2,838,736	2,549,402	131,947	52,099	79,848
광주	0	2	1,625,618	955,258	56,072	56,072	0
대전	0	1	500,616	90,773	4,875	4,875	0
울산	0	0	0	0	0	0	0
세종	-	1	114,479	37,372	2,669	2,583	86
경기	25	112	2,309,796	1,585,782	85,304	71,937	13,367
강원	15	17	2,171,886	881,017	27,341	19,833	7,508
충북	4	6	2,243,657	606,089	26,884	26,173	711
충남	6	10	862,486	360,751	19,142	15,770	3,372
전북	9	16	542,148	442,477	43,721	31,180	12,541
전남	11	37	2,849,110	2,217,436	87,653	69,212	18,441
경북	5	6	203,458	190,550	7,525	7,258	267
경남	9	16	563,411	313,553	24,150	18,604	5,546
제주	2	14	909,729	782,755	40,018	13,185	26,833

* 광역자치단체 운영(7개 시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4)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 장사업무 통계」, '25.11.